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고,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직렬 및 직류를 신설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현행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14조)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사 및 지도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하도록 함.

나. 연구직렬·직류 및 지도직류 개편과 그에 따른 채용요건 정비(안 제26조의2, 별표 1, 별표 2의3, 별표 2의5, 별표 4 및 별표 7)

- 연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직렬 및 직류를 신설하고, 경제등 응시가능 전공 및 자격증, 시험과목,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 등 채용요건 마련
- 일부 연구직류의 경제등 응시가능 전공에 반도체공학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 추가

- 농업연구직렬 작물직류와의 업무·기능 연계를 고려하여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를 작물직류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지도직렬에서 고유기능이 없어진 임업직류 및 농업토목직류 폐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전단 중 “1급 또는 임상심리사”를 “1급,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사회조사분석사 1급인 경우에는 5퍼센트로, 사회조사분석사”로, “5퍼센트로”를 “3퍼센트로”로 한다.

별표 1 제1호 나목 공업연구의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금속
섬유
화공
화학
산업경영
물리

별표 1 제1호나목 중 “방재안전연구”를 “안전연구”로 하고, 같은 란의 안

전관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관리	안전연구관	안전연구사
재난관리		
치안관리		

별표 1 제1호 나목 방재안전연구의 재난관리란 다음에 나목 안전연구의 치안관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전관리	안전연구관	안전연구사
재난관리		
치안관리		

별표 1 제1호 나목의 안전연구란 다음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통계연구	통계	통계연구관	통계연구사
------	----	-------	-------

별표 1 제2호의 과학기술의 농촌지도의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작물
농업경영
잠업
원예
축산
가축위생
농촌사회
농업기계
농촌생활

별표 2의3의 연구관·연구사란 중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통신공학, 컴퓨터공학 또는 반도체공학”으로 하고, 같은 란 공업연구의 전자란 다음에 공업연구의 정보통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보통신	정보통신공학, 모바일시스템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또는 인공지능공학을 전공한 사람
------	--

별표 2의3의 연구관·연구사란 중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생물정보학, 환경공학 또는 배터리공학”으로 하고, 같은 란의 물리의 연구관·연구사란 중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응용물리학, 원자력공학 또는 양자시스템공학”으로 하며, 같은 표 중 “방재안전”을 “안전연구”로 하고, 같은 란의 안전연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연구

별표 2의3 방재안전연구의 재난관리란 다음에 안전연구의 치안관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치안관리	경찰학, 해양경찰학, 소방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정책학, IT정책경영학, 통계학, 심리학, 향해학, 과학수사학, 범죄학, 경호학, 교정학, 공공안전학 또는 공공정책학을 전공한 사람
------	---

별표 2의3에 통계연구의 통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통계연구	통계	통계학, 데이터사이언스학, 빅데이터학, 인공지능학, 경제학, 사회학 또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
------	----	--

별표 2의5 제1호 공업연구의 전자란 다음에 공업연구의 정보통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보통신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사(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	---------------------------	---

안전연구	안전관리		기사(방재)
	재난관리		기사(방재)
	치안관리	변호사(3)	변호사

별표 4 제1호 공업연구의 전자란 다음에 공업연구의 정보통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llegible][illegible]

통계연구	통계 언어영역, 자연과학영역, 사회과학영역	논리, 자연과학영역, 사회과학영역	통계학, 조사항목론, 통계법제론, 경제학	표본조사론, 계량경제학, 사회학	통계학, 통계법제론	조사항목론	표본조사론, 계량경제학, 사회학	통계학, 조사항목론, 통계법제론, 경제학	통계학	조사항목론	표본조사론, 계량경제학, 사회학
------	----------------------------	--------------------	------------------------	-------------------	------------	-------	-------------------	------------------------	-----	-------	-------------------

		판단영역, 헌법, 영 어		중 1과목			리학 중 1과 목					리학 중 1과 목
--	--	---------------------	--	-------	--	--	--------------	--	--	--	--	--------------

별표 4 제2호의 농촌지도 중 “농업”을 “작물”로 하고, 같은 란의 농촌지도의 임업을 삭제하며, 같은 호 농촌지도의 농업토목을 삭제한다.

별표 7 공업연구의 전자란 다음에 공업연구의 정보통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보 통신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	---	--

별표 7의 농촌지도의 직류란 중 “농업”을 “작물”로 하고, 같은 표 농업연구의 농촌생활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촌 생활	기술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농촌 생활	기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작업안전보건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위생사
농업 경영	산업기사: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별표 7의 농촌지도의 임업을 삭제하고, 같은 표 농촌지도의 농업토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 연구	안전 관리	기사: 방재	
	재난 관리		
	치안 관리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변호 사

별표 7의 통계연구를 다음과 같이 한다.

통계 연구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통계 연구	통계	기사: 빅데이터분석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렬 및 직류 신설에 따른 응시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3, 별표 2의5, 별표 4,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렬 및 직류 신설에 따른 전직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신설되는 치안관리직류 관련 직무분야에 재직 중인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을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치안관리직류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전문경력관 가군은 치안관리직류의 안전연구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전문경력관 나군은 치안관리직류 안전연구사로 전직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없이 임용할 수 있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다른 직렬(별표 1의 각 직렬을 포함한다)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신설되는 통계연구직렬 관련 직무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계연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전직시험 없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연구직렬의 통계연구관은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통계연구직렬의 통계연구사는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직렬 및 직류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과학기술직군 방재안전연구직렬의 방재안전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안전연구직렬의 안전연구관 또는 안전연구사로, 종전의 별표 1 중 과학기

술직군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 임업직류 및 농업토목직류 지도직공무원은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농촌지도직렬 작물직류, 원예직류 및 농업기계직류의 해당 직급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종전의 별표 1 중 과학기술직군 방재안전연구직렬의 방재안전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사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안전연구직렬의 안전연구관 또는 안전연구사의 직급별 정원으로, 종전의 별표 1 중 과학기술직군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 임업직류 및 농업토목직류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농촌지도직렬 작물직류, 원예직류 및 농업기계직류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과학기술직군 방재안전연구직렬의 방재안전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사로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안전연구직렬의 안전연구관 또는 안전연구사로, 종전의 별표 1 중 과학기술직군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 임업직류 및 농업토목직류 지도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농촌지도직렬 작물직류, 원예직류 및 농업기계직류의 지도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방재안전연구직렬 공

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안전연구직렬의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 임업직류 및 농업토목직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각각 농촌지도직렬 작물직류, 원예직류 및 농업기계직류의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별표 1 중 방재안전연구직렬·방재안전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연구직렬·안전연구관 또는 안전연구사를, 종전의 별표 1 중 과학기술직군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 임업직류 또는 농업토목직류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농촌지도직렬 작물직류, 원예직류 또는 농업기계직류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다. 이 경우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일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삭 제 ④ ~ ⑥ (생 략)	<u>조사분석사</u> --- <u>3퍼센트로</u>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8297